

---

- 2019년 본청 재무감사(9월) -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



**삼척시**  
[기획감사실]

# 2019년 본청 재무감사(9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10건	주의 5 시정 5		841,600	훈계 *	
1	○○○○○	2018~ 2019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주의				
2	○○○○○	2017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3	○○○○○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40,000		
4	○○○○○	2017~ 2019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330,000		
5	●●●●●	2018	급량비 지급 부적정	주의			훈계 *	
6	●●●●●	2017~ 2019	일상경비 집행금액 초과	주의				
7	●●●●●	2019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5,000		
8	○○○○○	2018~ 2019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9	○○○○○	2018~ 2019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181,600		
10	■■■■■	2017~ 2019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75,000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지출일자	집행내용	계약자	계약금액	선납 지급금액	비고
계	3건				
2018.**.**	2018년 ***,***, ** ****용역	(주)** **	*,***,**	*,***,**	5% 할인청구
2019.**.**	2019년 삼척 ** ****용역	(주)** **	*,***,**	*,***,**	5% 할인청구
2019.**.**	2019년 삼척 ***,***, ** ****용역	(주)** **	*,***,**	*,***,**	5% 할인청구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

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납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에서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과업지시서에 따른 계약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 한 후에 대가를 지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 ●●●, ◆◆  
■□■□용역' 등 3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제공에 대한 검사를 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채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선납 시 5% 할인청구를 이유로 연초에 계약금액(청구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 등 계약내용 이행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지출일	집행내용	지출처	직위	지급금액	비고
2017.**.**	삼척시 *** ***** 회의 참석수당	***	시의회 의원	70,000	

## 2. 내 용

「삼척시 ○○○○ ○○○○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sup>1)</sup>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1) 1. \*\*\*\*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서 지휘부에 보고한 「삼척시 ◁◁◁ ◀◀◀◀◀ 구성·운영계획, ○○○○○-\*\*\*\*(2016.\*\*.\*\*.)」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1명, 위촉직 4명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은 시의회 의원 1명, 기타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 ◀◀◀◀◀ 개최에 따른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할 경우 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지방의회의원 자격의 위원 참석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삼척시 ◁◁◁ ◀◀◀◀◀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회 구성(안)으로 시의원 1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받았고, 실제 의회에 추천 의뢰를 통해 추천을 받아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명백함에도 시의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관련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4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3건					미소화 140
2018.**.**	** *** **을 위한 건설기계 임차	****	*,**	-	55	55 (미소화)
2018.**.**	** ***** *** ** 장비임차 용역	****	*,**	-	45	45 (미소화)
2018.**.**	***(** ***) **에 따른 임차료	****	*,**	-	40	40 (미소화)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

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을 위한 건설기계 임차’ 등 3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40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4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330,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가.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3건					300,000	
2017년 *** ***** *** ***/참석	***	2017.**.** ~**.**	**	175,000	105,000	70,000	주최기관 숙식제공
2018년 *** ***** *** ***/참석	***	2018.**.** ~**.**	**	181,000	111,000	70,000	
2018년 *** ***** **** */연수	***	2018.**.** ~**.**	** (**)	150,500	70,500	80,000	국외여비 중복
	***	2018.**.** ~**.**	** (**)	150,500	70,500	80,000	

## 나.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시간	공용차량	지급액	초과지급액
계	3건					60,000	30,000
1	***** *** 안전점검	***	2019.**.** 14:00~16:00	4시간 미만	미사용	20,000	10,000
2	***** 현장점검	***	2019.**.** 13:00~15:00	4시간 미만	미사용	20,000	10,000
3	**** ** 및 **	***	2019.**.** 14:00~16:00	4시간 미만	미사용	20,000	10,000

##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관외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공무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출장여비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 ♣♣♣♣ ♣♣♣♣ 워크숍 참석’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주최기관(\*\*\*\*)에서 숙박과 식사(3식)를 제공하므로 참석자에게 운임과 일비만 정산수령 하도록 사전에 안내<sup>2)</sup>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비와 식비를 제외하지 않아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였으며, ‘♥♥♥♥ ♦♦♦♦♦♦ 국외사례 조사 해외연수’에 따른 국내여비를 지급하면서 국외여비 지급액에 출장기간에 따른 일비와 식비가 전액 포함되어 있음에도 인천까지 이동하는 국내여비에 식비와 일비를 2일치 중복 계산<sup>3)</sup>하여 지출함으로써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나.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시 출장시간 및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장비 지급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2) 강원도 \*\*\*\*\*-\*\*\*\*\* (2017.\*\*)호 「\*\*\* \*\* \*\* 워크숍 참석자 확정 통지 및 협조요청」  
강원도 \*\*\*\*\*-\*\*\*\*\* (2018.\*\*,\*)호 「2018년 \*\*\* \*\* \*\* 워크숍 참석자 확정 통지 및 협조 요청」  
3) 출장기간 : 2018. \*. \*\* ~ \*. \*\* (4박 5일)  
- 국외여비 지급액(연수기간 \*~\*~\*\*) : 일비(\$26×5일), 숙박비(\$105×4일), 식비(\$49×5일)  
- 국내여비 지급액(1인기준) : 교통비(35,300원×2회), 일비(20,000원×2일), 식비(20,000원×2일)

그런데, ○○○○○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2만원을 지급하여 출장비를 정당액보다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330,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명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급량비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초과근무여부와 급식내역 불일치 현황

연 도	지급건수	급식인원 (급식내역서)	지출금액	실 초과근무 인원	초과계상 인원	비고
2018.1월~7월	100건	***명	*,***천원	**명	***명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2. 내 용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에서는 2018년 ○○○○○○○○○ □□□□□□□□ 급량비 지출 목적으로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에서는 ○○○○○○○○○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급식내역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부서에서는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 등 초과근무 실시자에 대해서 실제 급식을 실시한 경우에만 매식비를 지급하도록 급량비 지급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 □□□□□□□□ 급량비를 지출하면서 실제 초과근무를 실시한 자에 대해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임의로 급식내역서를 작성하여 실제 초과근무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계상해 급식비를 지출함으로써 급량비 지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라 초과근무 실시자 중 실제 급식 인원에 대해서만 급식을 제공하도록 조치하시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일상경비 집행금액 초과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 : 원)

연번	지급일자	적요	지출과목	채권자	집행금액	비고
계		3건			23,500,000	
1	2017.**.**	***** 근무복(여) 구입	201-01	****	6,300,000	
2	2018.**.**	2018년도 ***** **** 용역	201-01	**** *** (주)	7,000,000	
3	2019.**.**	2019년도 ***** **** 용역	201-01	**** *** (주)	10,200,000	

### 2. 내 용

「지방회계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 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받은 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지만,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500만원 미만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 근무복(여) 구입' 등 3건의 일상경비를 집행하면서 집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회계과장에게 계약 및 집행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일상경비로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500만원 이상 집행 시 회계과장에게 계약 및 집행을 요구하여 일상경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2019.**.**	***** ** 소모품 구입	****	*,***	-	15	15 (미소화)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

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소모품 구입’ 1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5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현황

지급일	적요	수량	내용	금액 (천원)	지출과목	적정 지출과목
계	4건			0		
2018.**.**	2018년 ***** 을 위한 안내문 발송비	*,***통	전자우편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8.**.**	2018년 ***** 을 위한 안내문 발송비	***통	전자우편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2019.**.**	사무실 소모품 구입	1식	커피, 차	***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19.**.**	2019년 ***** 을 위한 안내문 발송	*,***통	전자우편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구분하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우편물 발송대, 전보료 및 통신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을 위한 안내물 발송’ 우편요금을 공공운영비가 아닌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공통경비인 커피, 차 구입비용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181,6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 가.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2건					111,600	
2018년 ***** ** ***** 워크숍	***	2018.**.** ~**.**	춘천	164,000	74,000	90,000	출장일수 초과산정
***** *** 설명회 참석	***	2019.**.**	춘천	87,000	76,200	10,800	교통비 과다
	***	2019.**.**	춘천	87,000	76,200	10,800	

#### 나.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출장구분	출장자	관내출장일수		지급 금액	초과 지급액	비고
		새 울	지급명세서			
2018년 5월 관내출장 여비 (***** 및 ***** 정비사업 현장감독)	***	18일	19일	380,000	20,000	2018.4.12. 출장 중복지출

연번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시간	공용차량	지급액	초과지급액
계	5건					100,000	50,000
1	*** **** 운동 추진	***	2019.**.** 16:00~18:00	4시간 미만	미사용	20,000	10,000
2	*** **** 운동 추진	***	2019.**.** 16:00~18:00	4시간 미만	미사용	20,000	10,000
3	*** **** 운동 추진	***	2019.**.** 16:00~18:00	4시간 미만	미사용	20,000	10,000
4	***** ** 등 회계업무 추진	***	2019.**.** 16:00~17:00	4시간 미만	미사용	20,000	10,000
5	***** ** **** 설치 현장조사	***	2019.**.** 15:00~18:00	4시간 미만	미사용	20,000	10,000

##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하며,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관외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공무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출장여비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검사하여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2018년 ♥♥♥♥♥ ♣♣ ◎◎◎◎ 워크숍’에 따른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목적지인 춘천에서 워크숍이 16:00에 종료되어 근무지로 바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필요하게 다음날 토요일까지 출장을 신청하여 출장일수 산정이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여비(일비, 식비, 숙박비)도 초과지급 하였으며, ‘◆◆◆◆◆ ○○○ 설명회 참석’에 따른 출장여비는 춘천행 일반요금의 시외버스가 다수 배차되어 있음에도 배차편수도 적고 실제 이용하지도 않은 우등요금으로 교통비를 산정하여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 나.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시 출장일수 및 출장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출장비 지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2만원을 지급하였고, 관내출장비 지급명세서에 출장비를 기 지급한 전월 출장일을 추가로 기재함으로써 실제 출장일수보다 출장비를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181,6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7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1. 현 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6건					부족소화 175 초과소화 375
2017.12.27	*** 및 **** 민원서식 구입	***	*,*** (계좌이체)	-	20	20 (미소화)
2018.04.17	2018년 1사분기 **** * 홍보비	****	*,*** (계좌이체)	250	100	-150 (초과소화)
2018.04.17	2018년 1사분기 **** * 홍보비	****	*,*** (계좌이체)	350	140	-210 (초과소화)
2018.07.05	***** 지출 (2018. 2분기)	****	*,*** (계좌이체)	45	145	100 (부족소화)
2018.07.05	***** 지출 (2018. 2분기)	****	*,*** (계좌이체)	95	150	55 (부족소화)
2019.04.11	봄철 **** * ** 현수막 제작	****	*,*** (신용카드)	15	-	-15 (초과소화)

##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및 ■■■■■ 민원서식 구입’ 등 6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75천원을 미소화하고,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채권 매입 면제대상임에도 채권을 징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7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